

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4. 7. 3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○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『예산결산특별위원회』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.

가.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1년간 (2014. 7. 3 ~ 2015. 7. 2)

나. 구성인원 : 13인이내 (위원장 1, 부위원장 2 포함)

다.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

- 위원선임 : 의장추천 후 본회의 의결

(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)

- 위원장·부위원장 선출 :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 보고

(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, 제33조제2항)

라. 활동내용

-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, 기금운용계획 등 심사

2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
- 인천광역시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
-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
- 인천광역시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심사
-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
(기금 및 예비비 지출 포함)
-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
(기금 및 예비비 지출 포함)

3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, 제31조, 제33조

관련법령 발취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0조(특별위원회)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
2.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
3.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

-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, 위원 정수,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- ⑤ 영 제56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(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)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제31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)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한다. 이 경우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3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